

대전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나124462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전 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이로스

담당변호사 이재원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종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11. 4.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10. 27. 선고 2019가단56222 판결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2면 5행의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내지 4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2면 17행의 “사실을”을 “사실, ⑤ 피고가 G으로부터 위 각 토지 중 1/3 지분을 매수하여 2021. 7.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원고들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는데도 피고에게 가장 큰 손해를 입히는 권리행사방법이므로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종전 주장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3363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주택은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한 것이므로, 위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들이 보존행위로서 위 주택을 철거하는 것이 원고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위 주택의 철거 후에도 여전히 원고들 및 피고가 위 토지를 1/3 지분씩 공유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② 원고들과 G은 F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수 필지의 토지를 상속받았고, 원고들은 그 중 2/3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③ 피고는 자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D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보받을 수 있다. 피고는 실제로 D를 상대로 하여 위와 같은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D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를 압박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매매대금을 관철시키기 위해 당장의 매수제안을 거절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위와 같은 의도로 행위하여 왔다고 단정 짓기 어렵고, 그간 피고가 제시해 온 금액이 원고들의 관점에서 반드시 합리적인 액수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⑤ 만일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원고들로서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겠으나, 피고는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매경, 판사 이정호, 판사 신옥영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충청남도 당진시 대 826㎡

2. 충청남도 당진시 도로 150㎡

3. 충청남도 당진시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일반목구조 및 철근콘크리트구조 아스팔트평상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82.21㎡ 2층 39.08㎡ 부속건물 147.25㎡

끝.

